

재단운영규정

제1조(목적)

문속과학지원재단은 과학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과학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문속과학지원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2. 과학 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
3.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학 분야 전시회, 강연회, 출판에 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3조(수혜자)

1.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시 수혜자의 사전 동의하에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재산의 구분)

1.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歲計) 잉여금중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4.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은 기부금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2.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한다.
3.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다.
5.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6.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승인된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6조(회계의 구분)

1.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7조(회계원칙)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10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재단의 재산은 '1) 재단의 설립자', '2) 재단의 임원', '1)과 2)의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임원은 이사 12명 감사 2명을 둔다.
2.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3조(상임이사)

1. 목적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총원한다.

제16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이사회에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21조(이사회회의 심의, 의결 사항)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3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회기)

이사회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5조(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직무상 정당한 사유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1. 정관변경사유서
2. 정관개정안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9조(해산)

1.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한다.
2. 해산 시 재단의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30조(기부금 등의 취득 및 사용)

1.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포함하기 곤란한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기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1조(정치활동의 금지)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